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 839호 2011. 7. 19(화)

◀ 조 려 ▶

-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1048호) 2
-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49호) 6

◀ 훈 령 ▶

- 포항시 브리핑룸 운영 규정(제237호) 33

◀ 입법예고 ▶

-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1-681호) 37

◀ 공 고 ▶

- 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제2011-676호) 57
- 도로지정 공고(제2011-243호) 61

회 람									
--------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7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1048호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양양하는 한편, 군 장병과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포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병부대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를 말함

- 2. “장병”이란 해병부대 등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포항지역 해병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포함됨

제3조(시의 책무) 시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앙양하며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포항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포항시민, 주둔 군부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나. 외출·외박 장병의 여가활동 등 수용여건의 개선 사업
 - 다. 해병부대 등에 전입하는 장병에 대한 시정안내 사업
- 2. 민·관·군 교류증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
 - 나. 모범 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시정 투어(TOUR) 프로그램 운영
 - 다. 시민단체 또는 지역단체와 해병부대 등 지역주둔 부대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 3. 해병부대 등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 4. 해병부대 등 창설기념 행사, 지휘관 이·취임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 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
- 4. 해병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
- 5.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장병(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을 포함한다)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포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에서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7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1049호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쓰레기봉투”를 “중량제봉투”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

에”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 를 “중량제봉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쓰레기봉투” 를 “그 밖의 중량제봉투”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쓰레기봉투” 를 “중량제봉투”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조” 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 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신설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쓰레기봉투” 를 “중량제봉투” 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쓰레기봉투의 종류 등” 을 “중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중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 ②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

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리터” 를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으로 하고, “6종” 을 “5종” 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옅은 녹색(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봉투” 로,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구분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봉투” 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봉투” 로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를 표기 할 수 있다” 를 “고유번호,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고,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4조제4항과 제5항 중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봉투” 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에 한한다.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의하여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목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와 제4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일반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를 포함한다)”를 “일반용봉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봉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단, 공공기관 등 예산운영상 당일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위로 징수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0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제24조제2항 중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를 “1인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5조 제목 중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봉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봉투” 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의” 를 “그 밖의” 로 하며 “6월” 을 “6개월” 로 한다.

별표 4,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편 후 차곡차곡 쌓아 끈으로 묶어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 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종이컵,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판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 배출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
	- 기타 캔 (부탄가스, 에어졸,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주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빈병보증금제도에 의거 마트 등 소매업자에게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삭제>	<삭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목재, 플라스틱, 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 목재, 플라스틱, 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 물에 씻어 페인트 제거 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	- PET (음료수, 간장, 술병)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HDPE(물통, 삼푸, 세제용기) - LDPE(우유병, 막걸리병) - PP(상자류, 쓰레기통) - PS (요구르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삭제>
	- 합성수지용기류 - 플라스틱 받침접시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정	-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6. 스티로폼	- 가전제품 포장용	- 가전제품의 완충제로 사용한 스티로폼은 판매업자에게 배출
	- 농수산물 상자	- 이물질이나 물기 제거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컵라면용기	- 뚜껑은 제거하고 반드시 물에 세척(이물질이 묻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7. 필름포장재	- 1회용 비닐봉투	- <삭제> - 음식물류 담은 봉투는 제외(세척 후 물기 제거 시 가능)
	- 라면, 빵, 과자봉지, 한약봉지, 세제류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8. 의류	- 옷 (면섬유류, 기타 의류)	- 차곡차곡 접어 묶어 배출 (젖은 옷은 말린 후 배출) - 한복, 담요, 베게, 카펫, 나일론 제외
9. 영농폐기물	- 페비닐 - 농약유리병 - 농약플라스틱병 - 농약봉지	-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집하장에 배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수거요청
10. 폐형광등	- 직관형램프 - 원형램프 - 안전기내장형램프 - 콤팩트형램프	- 외피, 부속품 등은 제거한 후 공동주택, 관 공서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 대형건물, 다량배출업소(간판, 조명업체 등) 는 자가처리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1. 폐건전지	-알카리망간전지 -망간전지 -수은전지,산화은전지 등	- 공동주택, 관공서, 학교,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12. 생활계 폐목재	- 폐가구류 - 목재포장재 등	- 대형폐기물,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 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착 하여 배출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6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종량제봉투(리터)

- () 용 -
(지역용)

※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
에 관한 홍보문안 게재하고, 뒷면에
는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포 항 시 장

문의사항

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1. 봉투용량 표시는 종량제봉투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각각 표시 한다.
2. 봉투용도 표시는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표시한다.
3. 일반용봉투는 동지역용과 읍면지역용으로 각각 표시한다.
4. 봉투 묶는 부분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20리터)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봉투 마크

시-마크 /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

※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안 게재하고,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포 항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지 제14호 서식】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청인	성명		광고주와의 관계		
	주소		직책 또는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광고사업장	회사명				
	대표자(광고주)				
	소재지		연락처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		용량	10ℓ	20ℓ	50ℓ
		수량	매	매	매

상업광고게재문안

※ 별지작성 가능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 ----- ----- -----</p>
<p>제2조(정의) (생략)</p> <p>1. ~ 2. (생략)</p> <p>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 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종량제봉투 ----- ----- -----</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p>	<p>제3조(적용범위) -----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 ----- -----</p>

현 행	개 정
<p>의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별제14조 및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p>
<p>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1. ~ 3. (생 략)</p> <p>4. <u>기타</u>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p>	<p>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 ----- ----- ----- ----- ----- ----- -----1개월-----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 -----</p>
<p>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u>쓰레기 봉투</u>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 등 청소종</p>	<p>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u>중량제봉투</u>----- -----</p>

현 행	개 정
<p>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생 략)</p> <p>② (생 략)</p> <p>1. ~ 4. (생 략)</p> <p>5. <u>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u></p> <p>③ <u>대행수수료는 별표 6의 범위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u></p> <p>④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u></p> <p>③ <u>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u></p>
<p>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생 략)</p> <p>1. ~ 2. (생 략)</p> <p>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생활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 하여야 하며,</p>	<p>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p>

현 행	개 정
<p>시장은 설치된 보관 용기가 도 시미관을 저해하거나 <u>기타</u> 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 는 이전할 수 있다.</p> <p>② 공원,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 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u>당해</u>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 기통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 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 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p>	<p>----- -----<u>그 밖에</u>----- ----- ----- -----</p> <p>② ----- ----- -----<u>해당</u>-----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쓰레기봉투</u></p> <p>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 ① <u>쓰 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매립용, 소 각용),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봉 투 및 가로청소용마대로 구분한다.</u></p> <p>② <u>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 폐기물 을,소각용봉투에는 가연성 폐기물 을,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폐 기물을, 공공용봉투 및 가로청소용 마대에는 도로변, 가로, 골목길 기 타 배출자 불명 폐기물을 담는데</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종량제봉투</u></p> <p>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p> <p>① <u>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 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u></p> <p>② <u>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 용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p><u>사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비분리수거지역 및 소각시설 설치 전까지는 폐기물의 성상에 구분 없이 일반용 봉투에 담을 수 있다.</u></p> <p>③ <u>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의 6종으로 한다.</u></p> <p><u><신 설></u></p>	<p>③ <u>종량제봉투의 용량은 -----</u> ----- -----5종-----</p> <p>④ <u>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엷은 녹색(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u></p>
<p>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u>쓰레기봉투의 용도별 구분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계획 및 시 처리시설의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② <u>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u>쓰레기봉투</u>의 용도와 달리제작·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량별 판매가격은</u></p>	<p>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u>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구분 제작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u></p> <p>② ----- -----<u>종량제봉투</u>----- -----</p>

현 행	개 정
<p>별표 1의 판매가격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p> <p>③ 시장은 <u>쓰레기봉투</u>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u>고유번호</u> 등을 표시하고, <u>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를 표기</u>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차별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u>쓰레기봉투</u>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u>쓰레기봉투</u>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하여 검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 -----</p> <p>③ ---- <u>종량제봉투</u>----- ----- ----- -----<u>고유번호, 생활폐기물</u> <u>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u> 등을 표시하고, <u>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u>할 수 있다.</p> <p>④ ----- ----- ----- ----- -----<u>종량제봉투</u>----- -----</p> <p>⑤ ----- <u>종량제봉투</u>----- ----- ----- -----</p> <p>⑥ 제2항에 의한 <u>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u></p> <p>⑦ 제3항에 의한 <u>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u></p>

현행	개정
	<p>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에 한한다.</u> 2. <u>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u> 3. <u>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의하여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u> 4. <u>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u>

현행	개정
<p>제15조(쓰레기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u>쓰레기봉투·스티커</u>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u>쓰레기봉투</u> 지정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 업무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u>봉투 용량·수량</u> 등을 정하여 <u>계재하여야 한다.</u></p> <p>제15조(중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u>중량제봉투</u>----- ----- ----<u>중량제봉투</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u>쓰레기봉투</u>의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u>중량제봉투</u>-----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는 <u>쓰레기봉투</u>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 --<u>중량제봉투</u>----- ----- ----- 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4. <u>쓰레기봉투</u>의 현금 교환</p> <p>5. <u>기타</u> 행정지시 사항</p> <p>② (생 략)</p> <p>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소) (생 략)</p> <p>1. 정당한 사유없이 30이상 계속 하여 <u>쓰레기봉투</u>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 3. (생 략)</p> <p>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u>당해</u>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쓰레기봉투</u>를 구입하여 <u>쓰레기</u>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3. <u>기타</u> 등산로,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p> <p>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생 략)</p> <p>1. (생 략)</p> <p>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p>	<p>4. <u>종량제봉투</u>-----</p> <p>5. <u>그 밖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소) (현행과 같음)</p> <p>1. -----</p> <p>-----<u>종량제봉투</u>-----</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p> <p>-----</p> <p>-----</p> <p>-----</p> <p>-----<u>해당</u></p> <p>-----<u>종량제봉투</u></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p> <p>-----</p> <p>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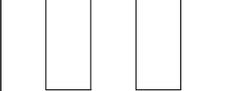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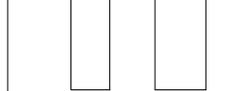
현행	개정
<p>부과·징수는 <u>쓰레기봉투</u>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3 의2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p> <p>3. (생략)</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u>쓰레기봉투</u>의 판매가격으로 한다.</p> <p>② <u>쓰레기봉투</u>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u>쓰레기봉투</u> 가격산정 방법에 따라 <u>일반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를 포함한 다)</u>의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인의 판매이윤을 포함하여 결정한다.</p> <p>제2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판매소에 <u>쓰레기봉투</u>를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u>사업장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u>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 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p>	<p>-----<u>종량제봉투</u>----- ----- ----- -----</p> <p>3. (현행과 같음)</p> <p>4. ----- ----- -----<u>종량제봉투</u>----- ----</p> <p>② <u>종량제봉투</u>----- ----- -----<u>일반용봉투</u>----- ----- ----- -----</p> <p>제2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 -----<u>종량제봉투</u>----- ----- -----</p> <p>② <u>사업장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u>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 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단, 공공기관 등 예산운영상 당일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p>

현 행	개 정			
<p>② ~ ④ (생 략)</p>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9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수탁 및 대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1. ~ 11. (생 략) 〈신 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 ----- ----- -----그 밖에----- ----- ② ----- ----- -----그 밖의 ----- ----- ----- 6개월----- --</p> <p>【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1. ~ 11.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749 1326 1210 1554"> <tr> <td data-bbox="749 1326 782 1554">12</td> <td data-bbox="782 1326 933 1554">- 폐가구류 - 목재포장재 등</td> <td data-bbox="933 1326 1210 1554">- 대형폐기물,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착하여 배출</td> </tr> </table>	12	- 폐가구류 - 목재포장재 등	- 대형폐기물,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착하여 배출
12	- 폐가구류 - 목재포장재 등	- 대형폐기물,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착하여 배출		

【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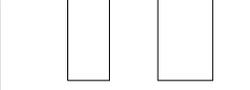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				〈삭 제〉
공동주택	지급 기준	수수료	비 고	
연일·대송권역	세대당	월 2,542원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오천동해권역	세대당	월 2,666원	”	
흥해·청하권역	세대당	월 3,328원	”	
남구동권역	세대당	월 2,638원	”	
북구동A권역 (양학, 죽도2, 용흥)	세대당	월 2,710원	”	
북구동B권역 (중앙, 학산, 죽도1, 우창)	세대당	월 2,765원	”	
북구동C권역 (두호, 장량, 환여)	세대당	월 2,848원	”	

【별표 6】

현 행	개 정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6항 관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시 - 마크</p> <p style="text-align: center;">중량제 봉투 (리터)</p> <p style="text-align: center;">- () 용 - (지역용)</p> <p>*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안 게재하고,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p> <p>문의사항 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재사용중량제봉투 (20ℓ)</p> <p>상품을 담은 후 중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재사용중량제 봉투 마크</p> <p style="text-align: center;">시-마크 /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p> <p>*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안 게재하고,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봉투용량 표시는 중량제봉투 5리터,10리터,20리터,50리터, 100리터로 각각 표시한다. 2. 봉투용도 표시는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표시한다. 3. 일반용봉투는 동지역용과 읍면지역용으로 각각 표시한다. 4. 봉투 묶는 부분 표시는 굵은 실선 으로 표시한다

현 행	개 정																																			
<p><신 설></p>	<p>【별지 제14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광고주와의 관계</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책 또는 직위</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년 월 일</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락 처</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고 사업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 사 명</td> <td colspan="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광고주)</td> <td colspan="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 재 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용 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ℓ ()</td> <td style="text-align: center;">20ℓ ()</td> <td style="text-align: center;">50ℓ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 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별지작성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포항시장 귀하</p>	신청인	성 명		광고주와의 관계		주 소		직책 또는 직위		생 년 월 일		연 락 처		광고 사업 장	회 사 명				대표자(광고주)				소 재 지		연락처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	용 량	10ℓ ()	20ℓ ()	50ℓ ()	수 량	매	매	매
신청인	성 명			광고주와의 관계																																
	주 소			직책 또는 직위																																
	생 년 월 일		연 락 처																																	
광고 사업 장	회 사 명																																			
	대표자(광고주)																																			
	소 재 지		연락처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	용 량	10ℓ ()	20ℓ ()	50ℓ ()																																
	수 량	매	매	매																																

【별표 6】

현 행				개 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6항 관련)</p>  <p>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공동주택	지급 기준	수수료	비 고	 <p>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연일·대송권역	세대당	월 2,542원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p style="text-align: center;">시 - 마크</p> <p style="text-align: center;">종량제 봉투 (리터)</p> <p style="text-align: center;">- () 용 - (지역용)</p> <p>*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안 게재하고,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p>	
오천·동해권역	세대당	월 2,666원	〃	<p style="text-align: center;">제사용종량제봉투 (20ℓ)</p> <p>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제사용하시면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사용종량제 봉투 마크</p> <p style="text-align: center;">시-마크 /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p> <p>*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안 게재하고,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p>	
홍해·청하권역	세대당	월 3,328원	〃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사항 포항시 청소과 전화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남구동권역	세대당	월 2,638원	〃	<p>1. 봉투용량 표시는 종량제봉투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각각 표시 한다.</p> <p>2. 봉투용도 표시는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표시한다.</p> <p>3. 일반용봉투는 동지역용과 읍면지역용으로 각각 표시한다</p> <p>4. 봉투 묶는 부분 표시는 짧은 실선 으로 표시한다</p>	
북구동A권역 (양학, 죽도2, 용흥)	세대당	월 2,710원	〃	<p style="text-align: center;">포 항 시 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북구동B권역 (중앙, 학산, 죽도1, 우창)	세대당	월 2,765원	〃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북구동C권역 (두호, 장량, 환여)	세대당	월 2,848원	〃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훈 령

포항시 브리핑룸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7월 19일

포항시 훈령 제 237호

포항시 브리핑룸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 브리핑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포항시 브리핑룸”이란 시정홍보와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정보의 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항시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브리핑룸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청 산하부서 공무원
2. 시민사회단체, 정부산하 기관단체
3. 정당
4. 그 밖에 홍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제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의 치적홍보 및 영리(사업용도) 목적
2.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내용일 경우
3.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브리핑룸을 이용할 경우
4. 그 밖에 국익을 심히 손상하거나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제5조(신고) 브리핑 룸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이용일 2일 전에 이용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해 포항시 홍보담당관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포항시청 자체 브리핑의 경우 이용신고서와 그 밖의 제반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통보) 외부 브리핑의 경우 일정이 확정되면 홍보담당관은 브리핑 시기, 장소, 내용 등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7조(이용중지) 신고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소란 등 브리핑룸 내의 질서 위반 행위 시에는 즉각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홍보담당관은 브리핑룸의 환경정비 및 시스템을 항상 정비해 브리핑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브리핑 이용신고서를 접수받은 홍보담당관은 사용유무 및 시간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담당관이 판단하여 결정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1- 681호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07월 19일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을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기본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
(안 제4조)
- 관계자(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 (안 제8조)

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안 제9조)

-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 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

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제8조 및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
(안 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5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안 제16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안 제16조, 제17조)

마.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안 제19조)

바. 상위 법규와 부합되지 않는 인용조문 개정

3.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8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청소과,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270-3192, FAX 270-3160 이메일 euiyong5802@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은 별표 1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함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함
-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함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 측정 후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판매가격으로 한다.
-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사용한 경우의 판매수수료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할 경우 별표 3의 배출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용기와 일치하는 납부증명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 혼합배출을 하는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

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 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 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

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기간) 이 조례 【별표 2】 제2호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에 관한 규정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종이, 플라스틱 등)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p style="text-align: center;">〈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 찌꺼기 : 종이, 형겅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 - 기 타 :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왕겨, 한약제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류, 심각하게 부패 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납부필증 (제9조제5항 관련)

1. 수수료 기준

구 분	부피단위	무게단위
종량제 수수료	22원/리터	30원/Kg

가. 단독주택 : 전용수거용기사용 원칙. 배출 부피단위 5ℓ 110원

나. 개별계량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교통카드사용 원칙. 무게단위

다. 다량배출사업장 및 음식점소 등 1일 평균 30ℓ 이상 배출업소

※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처리자 또는 운반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

2.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구분	용기 규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단독주택	5ℓ	101원	9원	110원
소형 음식점 및 공동주택	20ℓ	405원	35원	440원
	60ℓ	1,215원	105원	1,320원
	120ℓ	2,429원	211원	2,640원

주) 1. 판매수수료는 봉투판매수수료와 같이 적용한다.

2.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준한다.

3. 납부필증 색상

(부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

용기 규격	색 상	용기 규격	색 상
5ℓ	초록색	20ℓ	분홍색
60ℓ	노란색	120ℓ	파란색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납부증명서, 시마크, 포항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 (특허기술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1. 배출지역 : 포항시 전지역 (법 제14조제1항에 정한 구역은 제외)

2. 수거일

가. 남구 : 월·수·금요일

나. 북구 : 화·목·토요일

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수거차량이 수거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3.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음식점 : 주택 문 앞이나 상가건물 앞(문전배출)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거점수거 용기에 배출

4. 배출시간

가. 일반주택·음식점 : 수거일 오전 6시까지

나. 공동주택 : 수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가. 일반주택·음식점 :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나. 공동주택 :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가. 일반주택·음식점 :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할 때 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나. 공동주택 : 배출자가 계량장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하면 무게를 측정하고 배출량에 따라 요금 차감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호텔·콘도	실 (객실 수)	대규모점포	m ² (사업장면적)
	음식점	m ²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	농수산물도매시장	m ² (사업장면적)
	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		
배출 예상량 1)	음식물류 폐기물	kg/월 (1일 kg)		
발생 억제 계획 2)				
자가처리 계획 3)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kg/일	
	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발생량 kg/월	처리방법	처리자	
자가재활용 계획 4)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재활용량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5) (계획서첨부)	위탁 업소명		업종	전화
	주소		재활용방법	
	위탁 재활용량 kg/월		위탁 계약비용 원/kg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주소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에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집단 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전반저울 설치, 매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 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3. 자가처리계획
 -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4.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5.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다량 배출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단위: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가 처리량	처리량 누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계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호텔·콘도	실 (객실 수)	대규모점포	m ² (사업장면적)
	음식점	m ²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	농수산물도매시장	m ² (사업장면적)
	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		

발생량	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
-----	-----------------	------

발생억제 방법	
---------	--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	-------------	---

자가처리 실적	처리방법		
	처리시설능력	kg/일	연간처리량
	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부산물발생량	kg/월	처리방법

재활용 실적	자가 재활용	재활용방법	재활용량	kg/월
		위탁 업소명	업종	전화
	위탁 재활용	주소	재활용방법	
		위탁 재활용량	kg/월	위탁 계약비용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1- 676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포항시장 박승호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항시 양식어업면허 제18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 등 양식 어업 (수하, 연승식)
어업권자	주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16-2번지
	성명	김웅기 외 15명
	주민등록번호	551001-1*****
어업면허기간		2006. 05.24. ~ 2016. 05. 23.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2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7.5ha)
처분 년 월 일		2011. 7. 18.
면허번호		포항 제105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 등 양식 어업 (수하, 연승식)
어업권자	주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16-1번지
	성명	김웅기 외 1명
	주민등록번호	551001-1*****
어업면허 기간		2006.07.05. ~ 2016.06.24.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1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3.0ha)
처분 년 월 일		2010. 7. 18.
면허번호		포항시 양식어업면허 제132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 등 양식 어업 (가두리식)
어업권자	주소	울산시 남구 옥동 157-5번지
	성명	김명옥
	주민등록번호	521030-2*****
어업면허기간		2008. 07.25. ~ 2016. 05. 02.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2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3.4ha)
처분 년 월 일		2011. 7. 18.

면허번호		포 항 제 166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패 류 양 식 어 업 (가 두 리 식)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2리 384-1번지
	성 명	허 팔 방 외 1명
	주민등록번호	4 2 0 3 0 5 - 1 * * * * * *
어업면허 기간		2011.07.18. ~ 2021.07.17.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2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2.0ha)
처 분 년 월 일		2011. 7. 18.
면허번호		포 항 제 167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패 류 양 식 어 업 (가 두 리 식)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178번지
	성 명	최 준 식 외 1명
	주민등록번호	6 0 1 1 0 1 - 1 * * * * * *
어업면허 기간		2011.07.18. ~ 2021.07.17.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4.0ha)
처 분 년 월 일		2011. 7. 18.
면허번호		포 항 제 168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 합 양 식 어 업 (수 하 , 연 승 식)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261번지
	성 명	김 병 곤 외 14명
	주민등록번호	6 1 0 7 2 3 - 1 * * * * * *
어업면허 기간		2011.07.18. ~ 2021.07.17.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4.875ha)
처 분 년 월 일		2011. 7. 18.

면허번호		포 항 제 169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패 류 양 식 어 업 (가 두 리 식)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 어촌계
	성 명	신 창 1 리 어 촌 계 외 1명
	사업자등록번호	5 0 6 - 9 7 - 5 1 7 6 3
어업면허 기간		2 0 1 1 . 0 7 . 1 8 . ~ 2 0 2 1 . 0 7 . 1 7 .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5.0 ha)
처 분 년 월 일		2 0 1 1 . 7 . 1 8 .
면허번호		포 항 제 170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패 류 양 식 어 업 (가 두 리 식)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 17번지
	성 명	박 정 욱
	주민등록번호	7 5 0 1 2 8 - 1 * * * * * *
어업면허 기간		2 0 1 1 . 0 7 . 1 8 . ~ 2 0 2 1 . 0 7 . 1 7 .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2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3.4 ha)
처 분 년 월 일		2 0 1 1 . 7 . 1 8 .
면허번호		포 항 제 171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패 류 양 식 어 업 (가 두 리 식)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394-8번지
	성 명	권 원 수
	주민등록번호	3 8 0 3 2 8 - 1 * * * * * *
어업면허 기간		2 0 1 1 . 0 7 . 1 8 . ~ 2 0 2 1 . 0 7 . 1 7 .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3.0 ha)
처 분 년 월 일		2 0 1 1 . 7 . 1 8 .

포항시 복구청 공고 제 2011-243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 복구청장

2011. 7. 14

1. 건명 : 도로의 지정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복구 홍해읍 죽천리 435번지	435번지	16.0	30.0	4.0	2011.7.14	

3. 도면 : 복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문의처 : 건축과(054-240-7473)